공공재정지급금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청렴도 관련 공공재정지급금 특정감사 -

2023. 5.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시정	주의	권고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경징계	훈계	주의
계		5건	5	0	0	5	9,588	-	-	-	-	-	-	-
1	A A 소 방 서	AA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1			1	2,139							
2	S S 소 방 서	SS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1			1	1,872							
3	F F 소 방 서	FF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1			1	1,872							
4	H H 소 방 서	HH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1			1	1,705							
5	K K 소 방 서	KK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1			1	2,000							

2 처분요구일람표

1. AA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시정) ····· 1

2. SS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시정) ····· 4

3. FF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시정) ····· 6

4. HH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시정) ····· 8

5. KK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시정) ····· 11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AA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AA소방서
내 용	

AA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경상북도조례 제4325호) 제2조,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서장은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장학생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A소방서 QQQ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하며, 동일인인 장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AA소방서 QQQ과에서는 [표]와 같이 □□□□의용소방대 ZZZ 대원의 자녀 XXX을 2019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도에도 장학생으로 재선발하였고, ○○○○의용소방대 CCC 대원과 ◇◇◇◇의용소방대 VVV 대원의 자녀 BBB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도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재선발 하였다.

[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회 이상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 선정 심사일	장학금 지급		비고
의용 소방대명	신청인	신청일	자녀 성명	자녀학교명 (학년)		지급결정일 (e호조 지급명령일)	지급금액	
합계							6,139,300	
□□□□ 의용소방대	ZZZ	2019-03-08	XXX	●●대학교(1)	2019-03-28	2019-03-28 (2019-4-3)	1,000,000	
		2019-03-08	XXX	●●대학교(1)	2019-03-28	2019-09-18 (2019-9-26)	1,000,000	
		2022-03-17	XXX	●●대학교(2)	2022-04-08	2022-04-08 (2022-4-15)	936,000	중복
		2022-03-17	XXX	●●대학교(2)	2022-04-08	2022-09-16 (2022-9-27)	267,300	중복
○○○○ 의용소방대	CCC	2020-03-23	BBB	◆◆대학교(2)	2020-03-26	2020-03-27 (2020-3-31)	1,000,000	CCC과 VV는 부부관계
		2020-03-23	BBB	◆◆대학교(2)	2020-03-26	2020-09-28 (2020-9-29)	1,000,000	
◇◇◇◇ 의용소방대	VV	2022-03-17	BBB	◆◆대학교(4)	2022-04-08	2022-04-13 (2022-4-15)	936,000	중복

※ AA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총 2,139,300원(XXX 1,203,300원, BBB 936,000원)이 중복으로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AA소방서장은

앞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을 준수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을 선발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장학금 2,139,300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SS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SS소방서

내 용

SS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경상북도조례 제4325호) 제2조,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서장은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장학생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SS소방서 WWW과(현 EEE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인인 장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SS소방서 WWW과(현 EEE과)에서는 2021년도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표]와 같이 2020년 대학교 재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 받은 LLL에 대하여 2021년에도 장학생으로 재선발하였다.

[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회 이상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 선정 심사일	장학금 지급		비고
의용 소방대명	신청인	신청일	자녀 (장학생)	자녀학교명 (학년)		지급결정일 (e호조 지급명령일)	지급금액	
합계							3,872,000	
△△△△ 의용소방대	NNN	2020-03-05	LLL	■■대학교 (3학년)	2020-03-18	2020-03-25 (2020-03-25)	1,000,000	NNN MMM (부부관계)
						2020-09-22 (2020-09-22)	1,000,000	
▽▽▽▽ 의용소방대	MMM	2021-09-03	LLL	■■대학교 (4학년)	2021-10-08	2021-10-14 (2021-10-14)	1,872,000	중복

※ SS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872,000원이 중복으로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SS소방서장은

앞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을 준수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을 선발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장학금 1,872,000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FF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FF소방서

내 용

FF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경상북도조례 제4325호) 제2조,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서장은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장학생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FF소방서 RRR과(현 TTT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하며, 동일인인 장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FF소방서 RRR과(현 TTT과)에서는 [표]와 같이 ▷▷▷▷의용소방대 KKK 대원의 자녀 NNN을 2016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도에도 장학생으로 재선발하였다.

[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회 이상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 선정 심사일	장학금 지급		비고
소방서명	부서명	의용 소방대명	신청인	신청일	자녀 성명	자녀 학교명 (학년)		지급결정일 (e호조 지급명령일)	지급금액	
합계									2,872,000	
GG 소방서	▽▽▽▽ ▽안전센터	▷▷▷ ▷의용 소방대	KKK	2016-03-11	NNN	ㅁㅁ대학교(1)	2016-03-21	2016-03-22 (2016-3-24)	1,000,000	대학제적일 2016.△.△.
FF 소방서[1]	▽▽▽▽ ▽안전센터	▷▷▷ ▷의용 소방대	KKK	2021-03-22	NNN	▼▼대학교(3학년)	2021-04-20	2021-04-20 (2021-4-20)	936,000	중복
				2021-03-22	NNN	▼▼대학교(3학년)	2021-04-20	2021-04-20 (2021-9-7)	936,000	중복

※ FF소방서 및 GG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872,000원이 중복으로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FF소방서장**은

앞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을 준수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을 선발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장학금 1,872,000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FF소방서 개서일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HH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HH소방서

내 용

HH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공·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경상북도조례 제3392호)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 대해 대장이 추천한 자로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은 3년 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 위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을 엄수하여 추진할 것을 공문[2]으로 시달하였다.

따라서 HH소방서 YYY과(현 UUU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을 엄수하여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하고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HH소방서 YYY과(현 UUU과)에서는 [표]와 같이 ◁◁◁◁의용소방대 PPP 대원의 자녀 LLL이 2018년 ◆◆대학교 1학년으로 재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

2) 대응예방과-3572호(2016. 3. 4.,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상자 선발 철저”)

후 장학금 1,000천원을 지급하여 4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도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2020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서 제외치 않고 재선발하였고,

▶▶▶▶의용소방대 III 대원의 자녀 MMM이 2019년 ♧♧대학교 1학년으로 재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 후 장학금 1,000천원을 지급하여 4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도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2020년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서 제외치 않고 재선발하였다.

[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4년 이내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 선정 심사일	장학금 지급		비고
의용 소방대명	신청인	신청일	자녀 (장학생)	자녀학교명 (학년)		지급결정일 (e호조 지급명령일)	지급금액	
합계							3,705,000	
◁◁◁◁ 의용소방대	PPP	2018-03-16	LLL	◆◆대학교 (1학년)	2018-03-22	2018-03-27 (2018-03-27)	1,000,000	
		2020-02-28	LLL	◆◆대학교 (3학년)	2020-03-23	2020-03-31 (2020-03-31)	705,000	중복
▶▶▶▶ 의용소방대	III	2019-03-15	MMM	♧♧대학교 (1학년)	2019-03-25	2019-03-29 (2019-03-29)	1,000,000	
		2020-02-28	MMM	▽▽대학교 (1학년)	2020-03-23	2020-03-31 (2020-03-31)	1,000,000	중복

※ HH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총 1,705,000원(LLL 705,000원, MMM 1,000,000원)이 중복으로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HH소방서장**은

앞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을 준수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을 선발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장학금 1,705,000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KK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KK소방서

내 용

KK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공·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경상북도조례 제3392호)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 대해 대장이 추천한 자로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은 3년 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 위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을 엄수하여 추진할 것을 공문[3]으로 시달하였다.

따라서 KK소방서 VVV과(현 BBB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을 엄수하여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하고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KK소방서 VVV과(현 BBB과)에서는 [표]와 같이 ♤♤♤♤의용소방대 QQQ 대원의 자녀 EEE이 2018년 ☆☆대학교 1학년으로 재학 시 장학생으로

3) 대응예방과-3572호(2016. 3. 4.,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상자 선발 철저”)

선발 후 장학금 2,000천원을 지급하여 4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도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2020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서 제외치 않고 재선발하였다.

[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4년 이내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 선정 심사일	장학금 지급		비고
의용 소방대명	신청인	신청일	자녀 성명	자녀학교명 (학년)		지급결정일 (e호조 지급명령일)	지급금액	
합계							4,000,000	
♤♤♤♤ 의용소방대	QQQ	2018-03-13	EEE	☆☆대학교 (1학년)	2018-03-20	2018-03-21 (2018-3-21)	1,000,000	
		2018-03-13	EEE	☆☆대학교 (1학년)	2018-03-20	2018-10-25 (2018-10-30)	1,000,000	
		2020-03-09	EEE	☆☆대학교 (3학년)	2020-03-20	2020-03-30 (2020-3-31)	1,000,000	중복
		2020-03-09	EEE	☆☆대학교 (3학년)	2020-03-20	2020-11-04 (2020-11-5)	1,000,000	중복

※ KK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00,000원이 중복으로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KK소방서장**은

앞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을 준수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을 선발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장학금 2,000,000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